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2018. 8. 16(목) / 총 1매(본문1)
<b>담당부서</b>	주택건설공급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이유리, 사무관 김대전, 주무관 임재필 ·☎ (044) 201-3364, 3366, 3367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“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못해” 보도 관련

- 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「주택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
    -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 등)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\*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\*\*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\*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(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) ①항 제2호
- \*\*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(산업통상자원부)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(12~20m)하여 규정·운영 중

### 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8.16) >

- ◆ “국내선 자율주행이 불법...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못해”
  -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아파트, 놀이터, 의료시설과 50m 이상 거리를 뒤야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대전 사무관(☎ 044-201-3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